

##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일고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김명광\*

**요약** 이 글은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다문화 한국어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이에 제2절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재외동포법’을 살펴보고 제 3절에서는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본다. 검토해 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기본법,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관련 법률임을 밝혔다. 제4절에서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이 안정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비판적 고찰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밝힌 내용을 보면 첫째, 다문화 대상들이 부처 간 중복되어 ‘교재, 교육과정,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의 중복과 같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상위적 차원의 협의회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입안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부모’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법률 구안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셋째, ‘국어기본법’의 경우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술이 이는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이 세종학당 학생(또는 교사)일 수 밖에 없어, 법률적 정비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학습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법률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과정, 다문화 학습자, 세종학당

\* 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과,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kimmk0857@daegu.ac.kr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다문화 교육의 장기적이고도 안정적 시행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학습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 진술체로서 이는 국가 차원의 문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민교육헌장이나 교육부의 교육법(교육목표, 교육부령의 교육과정, 장학방침, 교과서, 교과용 교과 지침서 등에 대한 법적 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의사결정의 ‘주체’(국가 또는 국가 수준에서 인정하는 기관), 의사결정의 ‘형식’(국민교육헌장, 교육법에 의거한 법률 형태, 교육부의 법령과 같은 ‘문서화의 형식’), 의사결정의 ‘결과’(교육과정, 장학방침, 교과서, 교과용 교과 지침서)에 대한 국가 주도의 결정체라 볼 수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우선 기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과 같은 하위법 구성에 방향을 결정해 준다. 또한 교사나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며, 한국어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물질·인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보증 담보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성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 수준의 다문화 교육 과정에 대한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피대상이 되는 학습자는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재외동포 및 자녀, 귀국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기타 일반 목적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로 정의한다.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국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

준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부처가 입안한 법률들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기존 법률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 2. 국내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국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sup>1)</sup>이 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 및 고시를 한다.

### (1) 제23조(교육과정 등)

-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위 법령을 토대로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고 문서 형태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 초·중등교육법(법령, 시행령, 규칙)에 근거하여 고시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2)와 같은 관련법을 통하여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국가, 지역, 학교 등), 목적, 목표, 내용 편성, 운영, 교과, 방법, 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1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3943호, 일부 개정 2016. 2. 3.) 제23조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 (2)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주요 사항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국가 교육과정 기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침, 법적 기준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초·중학교의 교육 목적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41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학사일정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45조
학급 편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학교의 휴업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수업 운영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초·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48조
교류학습, 체험학습의 수업일수 인정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
진급과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중학교 수업연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42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교과용 도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장학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학생 자치 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교 규칙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평가 및 평가 결과 기록	초·중등교육법 제9조, 25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동시에 이 기준은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 운영에 대한 기준이므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교육부, 2015, 6-11)

### 3.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국내 교육과정이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국가 수준의 차원이라면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도 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다문화한국어교육에 대한 법령이 있는지 그것이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는데 근거가 되는지 또한 이 근거를 기반으로 현재 어떻게 교육과정이 구축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앞서 우리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교육과정의 피대상이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학습자 대상별로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과정 설치에 아래와 같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3) 재외 동포(재외 국민)

가. 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제8조(교육과정) [교육부령 제125호, 2017.2.28., 일부개정]

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나. 제10조(교육과정 등)

- ① 한국학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외의 교과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9.>

다.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기교육과정: 국내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2. 단기교육과정: 재외국민의 조국에 함양과 모국(母國)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3. 연수과정: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각종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단체 등의 교직원(외국인인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국어·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위 (3가)을 보면 재외 동포에 대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에 기술되어 있다. 먼저 제2절 ①항을 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

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국외 현지 사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편성한다고 하여 교육과정 구축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제10조를 보면 국어 교과목이 교육과정 변경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37조에 보면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을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은 장기, 단기로 나누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울러 제27조 ④항을 보면 문화에 대한 교과목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재외동포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 국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으로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아닌 제1언어로서의 국어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완전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

(4)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문(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호, 2012. 3. 21)의【별책 1】총론,【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별책 6】도덕과 교육과정,【별책7】사회과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별책 27】한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생략…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43]

교육부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증하자 2010년도에 12월에 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대하여 기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하여 귀국 학생의 범위를 귀국 학생, 재외국민 자녀 이외에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학생을 포함하였다. 이어 2012년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특별학급(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에서 한국어를 정규 교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다문화 예비 학교 운영, 한국어(KSL) 교육과정 도입 및 기초 학력 책임 지도, 이중 언어 교육 강화, 진로 진학 지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 단위에서 교과목으로 학교의 특성,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2012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 고시하고(현재는 2015년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한 후 이를 고시함. (4다) 참조), 2013년 3월부터 초중등학교 시행령에 의해 일선 학교에서 한국어를 주당 10시간 내외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 한국어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배경 학생들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를 정규 교과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고, 일선 학교 당국에서는 제한된 수준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법령은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서는 (4나, 다)에서 보듯이 2012년도에 별책 27권, 2015년에 별책 43권과 같은 만들었다. 이는 ‘별책 5’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별개로 구성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배경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다.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에서 ‘초·중·고등학교급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 교사용지도서, 익힘책’을 개발 하였다. 따라서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초·중등 학년’의 학생이 그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목표도 함께 하기 때문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sup>2</sup>.

(5) 가.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

2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의 통합성과 독자성에 대하여 박정진(2009: 69-90)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다. 이 논문도 이 두 영역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법령을 중심으로 고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박정진(2008)에서 논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조신설 2012.5.23.]

(5)의 ‘국어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입안) 제19조’에는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만들어진 한국어교육과정은 외국인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을 모두 포괄하며, 이는 법적 구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구축에 대한 토대가 된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19조 2항’을 보면, 비록 세종학당재단이 특수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⑤-3을 볼 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관련된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포괄적인 교육과정이 된다. 다만 세종학당에서는 세종학당 교재만 만들어져 있고,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이 조항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이 구축되고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고시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6)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부가 법률을 입안한 것으로 근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언급한 법령이다. 그런데 외국인 취업 교육이라 하여 명시적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취업 교육의 상당 부분이 한국어 교육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법령이

다. 하지만 교육과정 구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취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구축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

(7)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02호, 2017.3.21., 일부 개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6.3.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 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나.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 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 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12.1.>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라.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전문개정 2012.2.1.]

(7)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법률 입안)에 기술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교재, 강사들에 대한 지원(가①, ②), 이 교육의 목적이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가⑤),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나), 다문화가족 유아,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제10조 ②,④),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제 10조 ③)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한국어교육(라)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에 대한 법적 토대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의 대상으로 모두 포괄되지 않으며(다문화 가정 배경 학생은 이 법령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결혼 이민자는 이 법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어 기본법 19조가

이들을 전부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어 기본법에서는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라 기술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완성되려면, 법령과 함께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리고 이것이 정부 기관의 고시를 통하여 관련 교육기관에 공지되어야만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 세 과정에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4. 제언

위의 다문화 대상 한국어교육과정을 잘 보면, 해당 법률을 입안한 주체가 각각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초·중등 교육법’과 ‘재외동포법’은 교육부, ‘국어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이다. 또한 각각은 그 대상이 다른 데, 초·중등 교육법의 대상은 국내 학습자 이외에 ‘귀국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이다. ‘재외동포법’의 대상은 해외 거주 지역의 재외동포의 아동과 학생이며, ‘국어기본법’의 대상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외국인 결혼이주자 및 배우자, 결혼이민자 자녀)이다. 다문화 대상 한국어교육이 여러 부처에서 입안되었다는 점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초·중등 교육법의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과 중복된다<sup>3</sup>. 또한 ‘국어기본법’의 대상은 외국인 학습자와 재외동포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모든 대상을 포괄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모든 부처와 겹친다<sup>4</sup>(8 참조).

3 더 나아가 재외동포에는 재외국민과 그렇지 않은 학습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의 법률과도 충돌된다.

4 외국인 학습자나 재외동포를 포괄하는 법률은 세종학당재단의 제19조2의 ⑤에 있는 데 이는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으로 기술되어 있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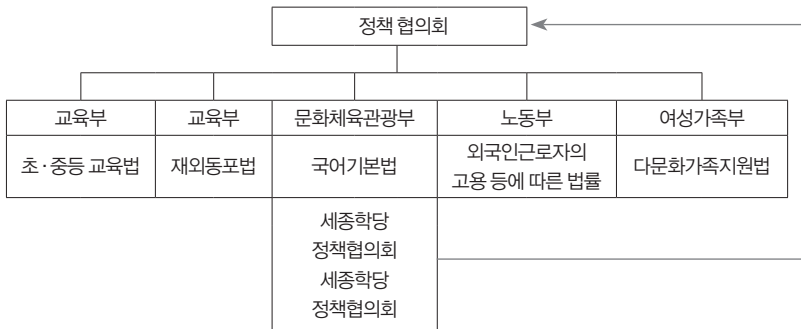
(8) 법률 입안 부처 및 대상

교육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초·중등 교육법	재외동포법	국어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따른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귀국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 국내 학습자	재외동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배우자 다문화 자녀

물론 대상들에 대한 교육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교재, 교육과정,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이 부처 간 중복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본질적으로 안게 된다. 따라서 그 대상을 포괄하는 법률 아래에서 각 부처 간의 법조항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교육 과정, 운영 예산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각 부처 간의 정책 조정을 위한 협의회는 세종학당 정책협의회(이전 국외협의회)가 있지만,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으로 다른 부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별도의 각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에서의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법률과 정책,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을 하여야만 한다.

(9) 법률 입안 부처 및 대상



다음에 각각의 법률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이 교육부 법률 및 시행령(초·중등 교육법 제24조 ②, 교육부령 제125호 제10조 및 제37조),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국어기본법 제19조 ⑤)에는 있지만, 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는 교육과정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히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여성과 배우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따른 법률’에서는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방문교육과 원격 교육,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교육과정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구축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교육과정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국어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면 외국인 학습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구축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법적 근거는 아닌 것이다.

첫째 ‘제19조 2’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며, ‘제19조 ②’는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의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곧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보급에 대한 언급은 세종학당재단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세종학당 학생(또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뜻한다. 둘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도 이는 일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결혼 이주자나 배우자, 외국인 근로자만의 명세화된 교육과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법률이 명시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글에서는 모든 부처가 각각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정 근거를 제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구축의 대상이 되는 부처 간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법률 조항을 특정 기관(세종학당재단)의 하위 조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률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조정의 기능을 갖는 협의회 차원에서 법률적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국가 수준의 다문화 대상 교육과정이 명시적으로 기술된다면, 하위 기관 차원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술 이후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요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다.(2 참조). 여기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지침, 교과목, 학사일정, 학급 편성, 수업 운영 방법, 학기 운영 방법, 진급과 졸업(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장학 지도, 학교 규칙 제정 평가 및 평가 결과 기록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국어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따른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이러한 항목들이 빠져 있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의 모든 항목들을 다른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교육 및 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개별 교육 기관들(예컨대, 한국어 교육 센터, 다문화 가정 센터, 외국인 근로자 센터, 직업학교 등)이 참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과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에 대한 것들은 각 대상별 목적에 맞게 기술되어야 일선 교육 기관의 교육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5. 결론

이 글에서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다문화 교육 특히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학습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 진술체로서 이는 국가 차원의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그것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이를 공시한다.

제2절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재외동포법’을 살펴보면서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와 형태를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기본법,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법률에 나타나는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다문화 교육이 안정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은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데, 특히 그 교육의 대상이 상호 중복되는 법 조항이 있었다. 예컨대, 초·중등 교육법의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과 중복되며 ‘국어기본법’의 대상은 외국인 학습자와 재외동포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겹친다. 이는 교재, 교육과정,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중복과 같은 위험성을 본질적으로 안게 되므로 그 대상과 운영, 그리고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회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세종학당 정책협의회(이전 국외협의회)를 부처 간 조정할 수 있는 상위의 협의체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교육부 입안 법률에는 있지만,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입안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여성과 배우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을 포함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따른 법률에서는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방문교육과 원격 교육,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교육과정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구축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교육과정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국어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면 외국인 학습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구축될 법적 근

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실제적으로는 세종학당 학생(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법적 근거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각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법률에 교육과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시 부처 간의 조정과 함께, 다문화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법률 조항을 특정 기관(세종학당재단)의 하위 조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법률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작업 또는 조정의 기능을 갖는 협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하위 기관 차원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각 부처 간 교육 및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각 기관들이 참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교신: 김명광(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교수)(kimmk0857@daegu.ac.kr; 전화: 053-850-6874)  
Correspondence: Kim, Myoung Kwang(Professor,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Daegu University)(kimmk0857@daegu.ac.kr, phone: 053-850-6874)

2017.11.17. 접수, 2017.11.21 심사, 2017.12.06 게재확정

## 참고 문헌

- 박정진, 2009,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의 통합성과 독자성, *한국어 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9-90.
- 원진숙 외, 2011,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서울교육대학교.
- 이원희, 2015, 교육과정 개념화의 이미지 유형, *교육학논총* 35권2호, 대경교육학회(구 우리교육학회), 61-78.
- 임찬빈 외,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영어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천주, 1991, 교육과정 유형의 변천과 전망에 관한 연구, *논문집* 11권, 기전여자대학, 69-95.

편윤희, 2015,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분류 제안, 한국어교육연구 제3호, 한국어교육연구학회, 113~137.

한혜정 외,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교육부.

세종학당재단, 2014,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

박정진, 2009,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의 통합성과 독자성, 한국어 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9-90.

[참고 사이트]

한국어교육관련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교육과정(NICC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kice.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On the Legal Basis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Learners - Focusing on National Level Curriculum -**

Kim, Myoung Kwang\*

**Abstract**\_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basis for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learners,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systemic co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Section 2 examines the provisions of Law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he Law on Overseas Koreans, and Section 3 analyses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at are sporadic in various ministries. As a result, There are Basic Act on the Korean Language draf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Act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Section 4, we made some suggestions with a critical review to ensure that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ism is stable and systematic overlap between government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separate, higher-level council to coordinate not to reduplicate the type of the multi-cultural learners since they can be overlapped between ministries, they can cause risks such as duplication of textbooks, curriculum, contents of education, program operation, and budget, etc. Second,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education process for the foreign worker and foreign marriage immigrant parents because the legal basis for the curriculum does not exist in the legisla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t, therefore,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proposal.

---

\* Daegu University, Professor,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mk0857@daegu.ac.kr

Third, Legal maintenance is required in the case of ‘Basic Act of the Korean Language’, the legal description related to the curriculum is defined only as the busines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and as a matter of fact, the subject is the King Sejong Institute student (or teacher). Comprehensive legal provisions covering all foreign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should be prepared separately.

**Keywords**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learners, Act on the Korean Language, Act on the Korean Language, Act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multi-culturalism, the King Sejong Institute, Higher-level council